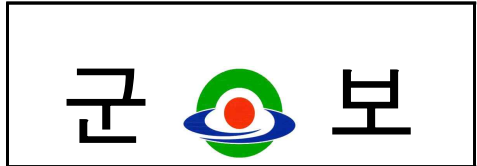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78호 2023. 10. 19.(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 간방1리 마을만들기 시행계획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3-139호)
- 괴당2리 마을만들기 시행계획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3-140호)
- 능천리 마을만들기 시행계획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3-141호)
- 만화2리 마을만들기 시행계획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3-142호)
- 우감2리 마을만들기 시행계획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3-143호)
- 황지리 마을만들기 시행계획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3-144호)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3-145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3-146호)

공 고

-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3-1315호)
- 예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3-1321호)
-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3-1322호)

회 람									
--------	--	--	--	--	--	--	--	--	--

간방1리 마을만들기 시행계획 고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인 **간방1리 마을만들기 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농어촌 정비법』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예 천 군 수

1. 사업의 명칭 : 간방1리 마을만들기
2. 위 치 : 예천군 보문면 간방1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
농촌지역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사 업 비 : 500백만원
5. 주요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마을안길 정비, 하수도 정비
 - 지역역량강화 : 노래교실, 생활공예교실 등
6.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
7. 사업시행기간 : 2023년 ~ 2024년(2년간)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농촌활력과(☎054-650-73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천리 마을만들기 시행계획 고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인 능천리 마을만들기 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농어촌 정비법』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예 천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능천리 마을만들기
2. 위 치 : 예천군 용문면 능천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과 농촌지역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사 업 비 : 500백만원
5. 주요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소공원 조성, 마을안길 정비
 - 지역경관개선 : 우물정비, 보호수 주변정비, 안내판 설치
 - 지역역량강화 : 마을가꾸기 교육, 마을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등
6.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
7. 사업시행기간 : 2023년 ~ 2024년(2년간)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농촌활력과(☎054-650-73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감2리 마을만들기 시행계획 고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인 우감2리 마을만들기 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농어촌 정비법』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예 천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우감2리 마을만들기
2. 위 치 : 예천군 개포면 우감2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과 농촌지역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사 업 비 : 500백만원
5. 주요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마을광장 조성, 마을안길 확포장
 - 지역경관개선 : 클린하우스 정비
 - 지역역량강화 : 아버지 요리교실, 마을가꾸기 등
6.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
7. 사업시행기간 : 2023년 ~ 2024년(2년간)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농촌활력과(☎054-650-73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변경 승인된 농업기반정비사업(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예 천 군 수

- ①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②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 ③ 변경내용 : 공사계획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

승 인 조 서

사업명	위 치				승인 면적 (㎡)	사업기간	총소요 사업비 (천원)	사업시행자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 (개간)	예천	지보	어신	산 11-1	4,950	(당초)2022.08.01.~2023.07.31. (변경)2022.08.01.~2023.12.31.	75,800	**회사법인 ****군화수회 주식회사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예 천 군 수

구 분	하천점용허가
하 천 명	한천(지방하천)
점 용 자	예천군수(농정과장)
주 소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위 치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310-1번지
점용면적	23,270㎡
점용목적	토지의 점용(농산물축제장)
사업개요	축제장 운영에 따른 임시시설물 설치
점용기간	2023년 10월 19일 ~ 2023년 11월 06일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실무반의 업무와 역할 일부 변경(별표 1)

나. 업무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 변경(별표 2)

- 다.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 기준(근무 인원 등) 변경(별표 4)
- 라.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주관부서 등 변경(별표 5)
- 마.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등의 재난 시 비상단계 기준 변경(별표 6)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 (참조 : 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 1) 전자우편(이메일) : chan2211@korea.kr
-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 3) 팩스 : 054-650-61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안전재난과(전화 : 054-650-61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재난상황의 통보 등)”을 “(재난상황의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보”를 “보고”로 한다.

제22조제6호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사업 협의회를 비상설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 비상설화 (안 제11조)

-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hyogun12@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도시과

3) 팩스 : 054-650-897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도시과(전화 : 054-650-897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협의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구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1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협의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u>
<u>제13조(임기) 위원회 임기는 2년</u> <u>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u> <u>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u> <u>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u><삭제></u>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전기자전거 도입을 통하여 신도시 내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교통 분담률 제고 및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주민 정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기자전거(PAS) 도입(안 제2조)

나. 전기자전거 이용 대상 규정(안 제4조)

- 13세 이상부터 이용 가능하며, 19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하다.

다. 전기자전거 이용요금 규정(안 별표)

- 기본요금(기본 이용 1일 누적 2시간) 무료, 추가 요금 30분당 500원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 1) 전자우편(이메일) : wjddbs4641@korea.kr
-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도시과
- 3) 팩스 : 054-650-897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도시과(전화 : 054-650-897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말한다”를 “말하며, 일반자전거와 페달 보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전기자전거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거치대”란 회원카드의 인식 또는 버튼조작으로 작동되는 자동 잠금장치가 부착되어”를 ““거치대”란”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영자전거”를 “일반자전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기자전거 이용 대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13세 이상으로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이용승인)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을 하고 「공영자전거 이용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영자전거의 회원가입비 및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다.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운행속도의 제한) 전기자전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최고속도

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탄소중립 생활 실천 관련 문구·도안·사업 안내 등이 표기된 홍보물품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캠페인 및 자전거의 날 행사, 자전거 안전 교육에 필요한 간식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중전의 제9조)제2항 중 “타이소”를 “공영자전거”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2조)제4항 중 “제9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4조)제1호 중 “제10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5조)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조례 [별표]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회원가입비 및 이용요금 (제6조 관련)

구분	일반자전거	전기자전거
회원가입비	1,000원	
기본요금	무 료	
추가요금	30분당 500원 (기본 대여시간 초과 시)	
기본대여시간	대여 후 3시간	1일 누적 2시간 이내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이하 “공영자전거”라 한다)란 경북도청신도시 내에서 운영하는 무인대여 공영자전거를 말한다.	1.----- ----- ----- <u>말하며, 일반자전거와 페달 보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전기자전거로 구성한다.</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u>거치대</u> ”란 <u>회원카드의 인식 또는 버튼조작으로 작동되는 자동 잠금장치가 부착되어</u> 공영자전거의 대여 및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테이션에 설치된 공영자전거 전용 시설을 말한다.	3.“ <u>거치대</u> ”란 ----- ----- ----- -----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4조(이용대상) <u>공영자전거</u> 이용 대상은 자전거 운전이 가능하고 제6조의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4조(이용대상) ① <u>일반자전거</u> ----- ----- -----.
<u><신 설></u>	② <u>전기자전거</u> 이용 대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제6조(이용승인) ①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
을 하고 「공영자전거 이용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영자전거의 이용요금은 별
표와 같다.

제7조(운영 및 이용시간) ①·②
(생략)

③ 공영자전거 1회 대여 시 기
본이용시간은 대여 받은 후 3시
간으로 하고, 운영시간 내에는
재이용이 가능하며, 기본이용시
간 내에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
추가요금은 30분 단위로 납부하
여야 한다.

<신설>

제8조(이용지원) (생략)

<신설>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13세
이상으로 한다. 다만, 19세 미만
의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이용승인) 공영자전거를 이
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
을 하고 「공영자전거 이용 약
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및 이용시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영자전거의 회원가입비 및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다.

제8조(운행속도의 제한) 전기자전
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최
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
으로 한다.

제9조(이용지원) ① (현행 제목 외
의 부분과 같음)

② 군수는 공영자전거 이용 활

	<u>성화를 위하여 이용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탄소중립 생활 실천 관련 문구·도안·사업 안내 등이 표기된 홍보물품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캠페인 및 자전거의 날 행사, 자전거 안전 교육에 필요한 간식 등을 지원할 수 있다.</u>
<u>제9조(이용제한 및 변상조치) ①</u> (생 략)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u>타이소</u> 및 그에 따른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실 제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u>제10조·제11조</u> (생 략) <u>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③</u> (생 략) ④ 수탁자가 <u>제9조</u>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u>제13조</u> (생 략) <u>제14조(위탁의 취소)</u> 군수는 다음	<u>제10조(이용제한 및 변상조치) ①</u> (현행과 같음) ② ----- <u>공영자전거</u> ----- ----- -----. <u>제11조·제12조</u>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u>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③</u> (현행과 같음) ④ ----- <u>제12조</u>----- ----- ----- ----- ----- -----. <u>제14조</u> (현행 제13조와 같음) <u>제15조(위탁의 취소)</u>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u>제10조</u>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3. (생략) <u>제15조</u>(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고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u>제16조</u> (생략)	----- ----- -----. 1. ----- <u>제13조</u>----- ----- 2. 3. (현행과 같음) <u>제16조</u>(준용) ----- ----- ----- -----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u>제17조</u> (현행 제16조와 같음)
--	--